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65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황 희 · 한민수 · 이용선  
안규백 · 김태년 · 박수현  
이소영 · 손명수 · 이언주  
박용갑 · 최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강의 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등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관련 정보 및 이용자의 사전 신청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함(안 제2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이나 물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말한다.

4.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공공개방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 이용권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개방자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으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외국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개방자원 등록 및 이용 현황
3. 공공개방자원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물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개방자원 이용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용도, 이용 기간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개방자원 및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17조의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이용 신청)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 조건(이하 이 조에서 “이용 조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행정기관등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용 승인한 공공개방자원을 행정기관등의 장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③ 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에 해당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
3. 공공개방자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개방자원에 한정한다)이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

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보수, 물품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공공개방자원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공개방자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용료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나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개방자원 지정 현황
2. 이용 용도, 이용 시간, 이용료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
3. 공공개방자원의 장애인 체육활동 가능 여부
4. 이용의 신청·승인 및 취소·철회 절차
5. 이용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개방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협력)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면책) ①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

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승인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